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5
----------	-----------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을 한정하여 다른 재질의 제품에 대하여 진입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의 재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11조)

○ 폴리에틸렌 ⇒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

나.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반영함(안 제8조, 제19조)

○ 감량 의무 이행 계획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과태료 관련 삭제함(안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별표 6)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6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6.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로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제15조 제목·제1항·제2항, 제18조제4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조례 제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u>식품위생법</u>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u>휴게음식점영업</u>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략)</p> <p>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u>감량의무이행 계획서</u>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u>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p> <p>⑤ (생략)</p> <p>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 -----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 -----</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장수) ① <u>법 제14조제4항에 따라</u>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p>② ~ ⑦ (생략)</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장수) ① <u>법 제14조제5항</u>----- ----- ----- ----- -----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③ (생략)</p> <p>④ <u>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생략)</p> <p>② <u>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u></p> <p>③ <u>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u></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u></p> <p>③ ----- ----- ----- ----- ----- ----- <u>다량배출사업장</u>----- -----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② (생략)  <b>③</b>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b>&lt;삭제&gt;</b></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b>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b>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  -----<b>영</b>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b>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b>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b>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b>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p>	<p>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b>다량배출사업장</b>  -----  -----  -----  -----  -----  -----  -----  ② <b>다량배출사업장</b>-----  -----  -----  -----  -----  -----  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li> <li>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li> <li>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할 것</li> <li>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li> <li>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li> </ol> <p>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p>	<p>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할 것</li> <li>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할 것</li> <li>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 <u>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u>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p> <p>2. (생략)</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p> <p>1. ----- ----- ----- --<u>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u>----- -----</p> <p>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u>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④ <u>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lt;삭 제&gt;</p> <p>①-----<u>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u>----- ----- ----- -----</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③-----<u>다량배출사업장</u>----- ----- ----- -----</p>
<p>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p> <p>① <u>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u></p> <p>② <u>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u></p>	<p>&lt;삭 제&gt;</p>